

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

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일

강릉시장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비: 120백만원(보조금 60백만원, 자부담 60백만원)

나. 사업기간: 2024. 2. 1.(목)~예산 소진 시까지

다. 사업량: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20대

라. 지원금액: 구입금액의 50%, 한도액 50만원(초과분 자부담)

예시) 구입금액이 80만원인 경우 보조금 40만원 / 자부담 40만원
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/ 자부담 50만원
구입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/ 자부담 70만원

마. 지원대상: 공고일 전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
- * 단, RFID 기반 종량제 실시 대상인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
(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량기에 투입하는 공동주택)
- * 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자는 지원 불가(완납 후 가능)

바. 대상기기

1) 처리방식

- 가열, 송풍, 소멸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
- *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는 인증 받은 제품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

2) 감량효율

- 건조식 감량기기: 부산물 수분함량 25% 미만
- 발효 및 발효건조식 감량기기: 부산물 수분함량 40% 미만

3) 품질인증제품

- 안전인증: 전기용품 안전인증
- 공인기관 품질인증: 환경분야 검증, 품질검사,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함

2.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

가. 신청대상: 공고일 전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(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가능하며 1세대당 1대 제한)

나. 지원조건

- 1) 보조금은 총구입비의 50%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(50만원 한도),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처리
- 2)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, 교부 결정 전 사전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
- 3)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신청
(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2개월 경과 시에는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)
- 4) 지원대상 가능 기기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불가능한 품목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
- 5)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기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사용(보유)하여야 하고,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거나 처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

3. 신청 및 접수

가. 기 간: 2024년 2월 1일~12월 31일 10:00~17:00

(선착순,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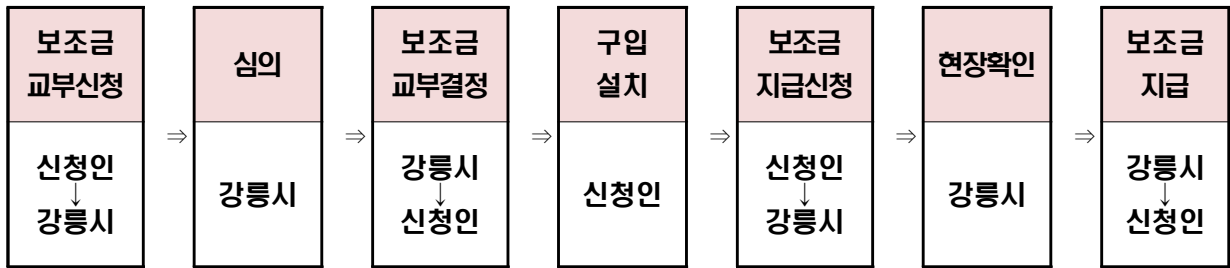
나. 신청방법: 강릉시청 13층 자원순환과 방문 신청서류 서면 접수

(우편·팩스·전자메일 불가)

다. 신청서류

-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【붙임 1】
- ② 사업계획서 【붙임 2】
- ③ 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【붙임 3】
- ④ 폐기물분야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【붙임 4】
- ⑤ 주민등록등본
- ⑥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

4. 추진절차



5. 사업대상자 선정

- 가.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교부결정 통지(개별통보)
- 나. 예산소진까지 신청자 선착순 선정을 우선으로 함(계획물량 120대)
(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에서 선정)

6. 유의사항

- 가. 지원조건에 맞는 기계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하므로 교부신청 전에 인증제품 여부, A/S 등 사전문의 확인 바람
- 나. 보조사업자가 설치업체에 전액을 지불하고 설치 완료 후 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50%(한도 50만원)를 통장으로 지급함
(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제품 구입·설치 후 보조금 지급신청시 전체 구입 금액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또는 신용구매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야 함)
- 다.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불가

사업 관련 문의처 강릉시 자원순환과 033-640-4477 또는 4526

강릉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

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
	주소				연락처	
사업목적	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및 주거환경 개선					
사업내용	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설치					
사업기간	2024년 월 일 ~ 월 일					
총경비	금 원	교부받고자 하는 금액		금	원	
		자기자본 부담액		금	원	
계좌번호	은행명:	계좌번호:		예금주:		
<p>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자 : (인,서명)</p> <p>강릉시장 귀하</p> 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사업계획서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폐기물분야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						

사업계획서

사업명	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		
소재지			
사업의 목적	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및 주거환경 개선		
사업의 내용	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설치		
사업의 기간	2024년 월 일 ~ 월 일		
사업량	음식물쓰레기처리기 1대 - 제품명: (처리방식:) - 제조사: - 용량:		
사업비	계	보조금	자부담
	금 원	금 원	금 원
자부담 방법	총 사업금액의 50% 이상 부담(현금 또는 신용구매)		
위와 같이 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			
2024년 월 일			
신청인 주소:			
성명: (인,서명)			
주민등록번호:			
연락처:			
강릉시장 귀하			

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

강릉시 자원순환과에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수하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【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 】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여부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: 성명, 주민등록번호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~ 보조금 집행 완료

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단 동의가 없을 경우 보조사업의 신청에 대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【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】

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여부
-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내용: 성명, 주민등록번호
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~ 보조금 집행 완료

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단 동의가 없을 경우 보조사업의 신청에 대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(하지 않음)함.

2024년 월 일

확인자(신청인)

(인,서명)

강릉시장 귀하

폐기물분야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

(사업명: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)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릉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, 귀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 및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관련 조사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강릉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- **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**
 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**10년** 이하의 징역 또는 **1억원** 이하 벌금 부과
 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**5년** 이하의 징역 또는 **5천만원** 이하의 벌금 부과
 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**1천만원** 이하의 벌금 부과

2024. . .

제출자

(서명, 인)